

하남시 문화행사 심의·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문화
정책과)

제출일 : 2025. 2.

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(2024.11.)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문화행사 심의·평가위원회 운영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'문화행사'에 대한 정의 명확화(안 제2조제1호)
- 나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9조의2)
- 다. 「한글맞춤법」 및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
(안 제5조, 안 제6조 및 안 제11조)
- 라. 다른 법령의 유사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등 제출 기한 변경
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종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86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(2024.11.)에 따라 위원의

제척·기피·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문화행사 심의·평가위원회 운영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